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791
----------	-------

발의연월일 : 2026. 7. 7.

발 의 자 : 이종배 · 이현승 · 김기웅  
김미애 · 서지영 · 서명옥  
박충권 · 이인선 · 정동만  
엄태영 · 권영진 · 최보운  
이만희 · 진종오 · 배준영  
최은석 의원(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소경제 이행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수립하여야 하는 주기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문제가 있음.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국가 수소경제 정책의 연속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타 에너지 관련 법령과의 체계적 일관성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수립하여야”를 “5년마다 수립하여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으로 본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의 수립)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경제 이행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u>수립하여야</u> 하며, 사회적·경제적 여건변화 등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p> <p>② ~ ⑤ (생략)</p>	<p>제5조(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의 수립) ① ----- ----- ----- ----- -----<u>5년마다 수립</u> <u>하여야</u>----- ----- ----- -----.</p> <p>② ~ ⑤ (현행과 같음)</p>